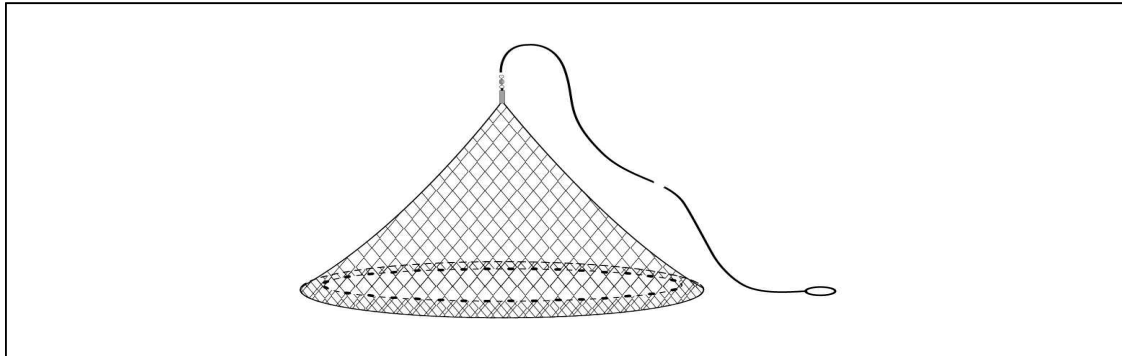


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<신설 2024. 2. 29.>

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
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(제6조제1항 관련)

1. 투망(영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)

가. 투망의 형태: 원뿔형태의 그물로서 윗부분에는 기다란 손잡이줄이 있고,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는 형태이며, 투망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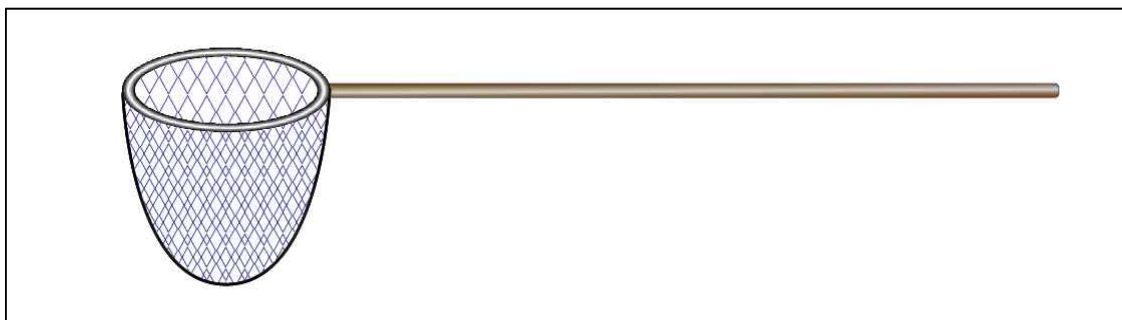


나. 사용방법: 그물이 넓게 펴지도록 물에 던진 다음 손잡이줄을 서서히 당겨 추가 바닥에 닿은 채로 그물이 오므라들도록 하여 그물에 갇힌 대상물을 잡는다. 이 경우 그물의 아래 둘레는 25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2. 뜰채(쪽지), 반두(쪽대), 손들망(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나목)

가. 뜰채(쪽지)

1) 뜰채(쪽지)의 형태: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대나무나 철사 등으로 테를 두르고, 테에 한 개의 막대로 된 손잡이가 붙어 있는 형태이며, 뜰채(쪽지)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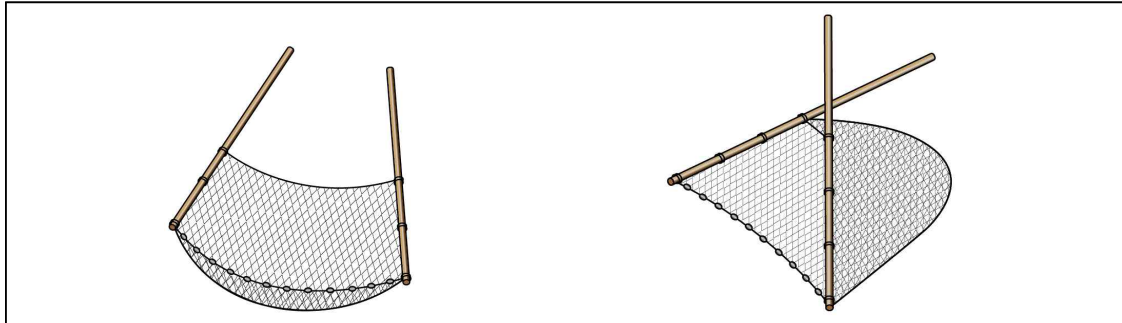


2) 사용방법: 손잡이를 잡고 조작하여 대상물이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다. 이 경우 테의 가장 긴 변의 길이(테가 원형인 경우에는 그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)는 1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나. 반두(쪽대)

1) 반두(쪽대)의 형태: 사각형태 그물의 아랫 부분에는 추가 달려 있고, 양쪽 가장자리에는 막대로 손잡이를 붙여 만든 형태이며, 반두(쪽대)의 도면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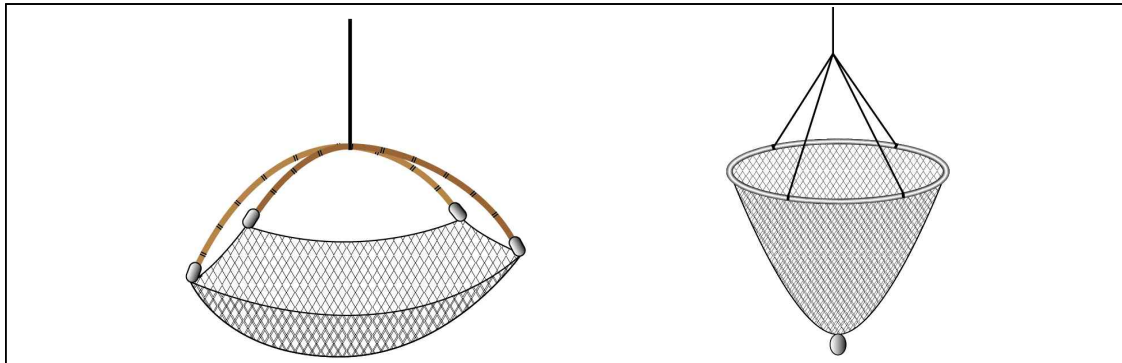
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- 2) 사용방법: 손잡이를 잡고 그물을 펼친 후 대상물이 펼쳐진 그물 위로 가도록 하여 재빨리 들어 올려서 잡는다. 이 경우 그물의 가장 긴 변이 2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다. 손들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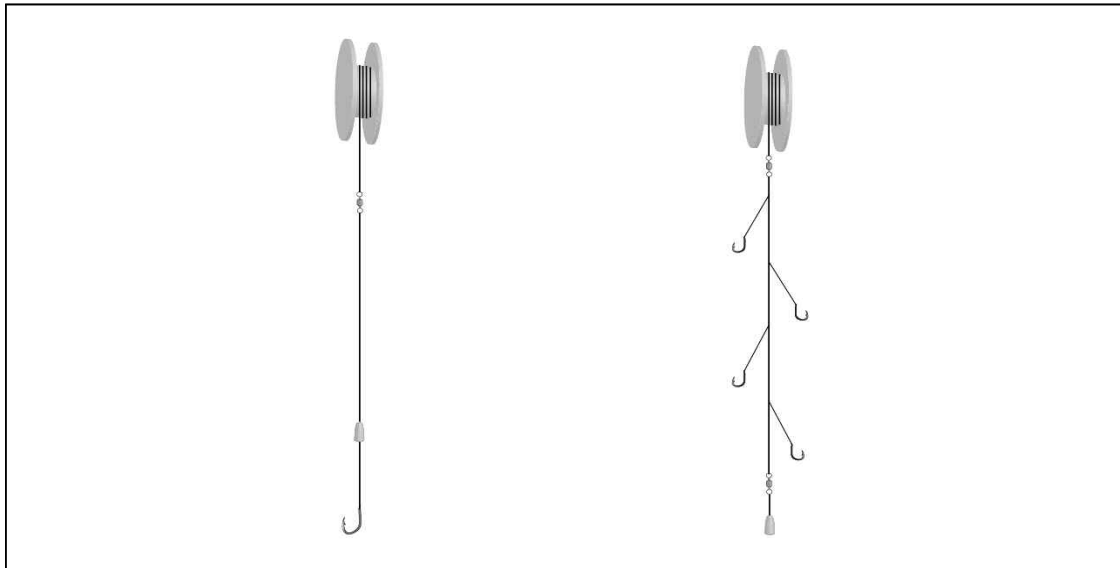
- 1) 손들망의 형태: 일정한 모양의 틀이나 테의 아래쪽에는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달고, 위쪽에는 목줄과 돋움줄(당김줄)을 단 형태로, 손들망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- 2) 사용방법: 손들망을 물속에 넣어 두었다가 대상물이 그물 위에 오면 돋움줄을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그물에 갇힌 대상물을 잡는다. 이 경우 그물의 가장 긴 변이 2미터(틀이나 테가 원형인 경우에는 그 지름이 2미터를 말한다)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3. 외줄낚시(대낚시 또는 손줄낚시)[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다목]

- 가. 외줄낚시의 형태: 낚싯줄 한 가닥에 낚싯바늘 1개 또는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단 형태로 대나무 등 긴 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외줄낚시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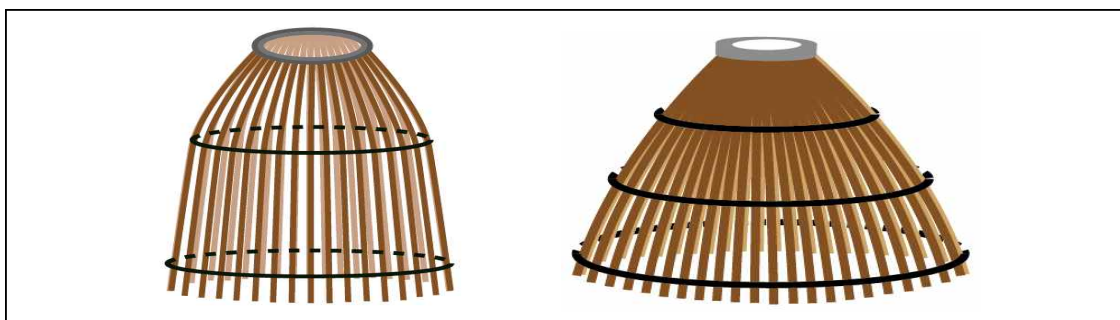


나. 사용방법: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거나 끼우지 않고 물속에 넣어 낚싯바늘에 대상물이 걸리면 낚싯줄을 감아올려 그 대상물을 잡는다. 이 경우 낚싯줄과 낚싯바늘 등 낚시도구와 미끼 등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을 적용한다.

4. 가리, 통발(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)

가. 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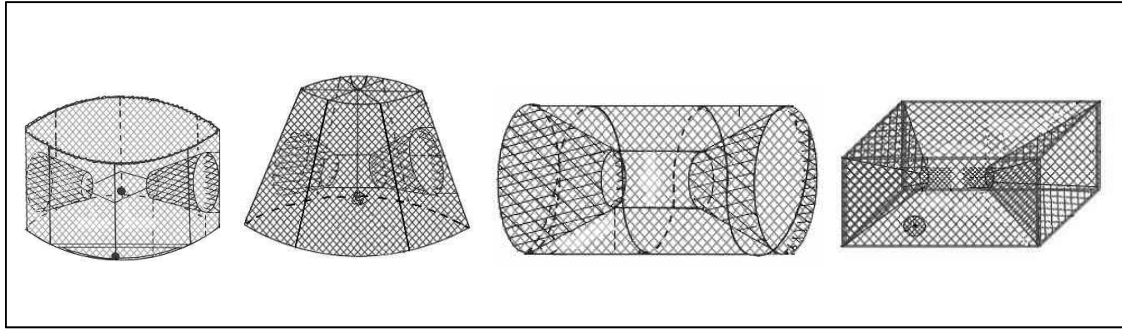
1) 가리의 형태: 대나무와 같은 재료를 엮어서 밑과 위가 뚫린 원뿔대 모양으로 만든 형태로, 가리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2) 사용방법: 주로 얕은 물에서 대상물 위에서 덮어씌워 대상물을 가둔 후, 위쪽에 있는 구멍으로 손을 넣어 대상물을 잡는다. 이 경우 가리의 가로·세로·높이의 길이(원통형인 경우는 지름을 말한다)는 각각 8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나. 통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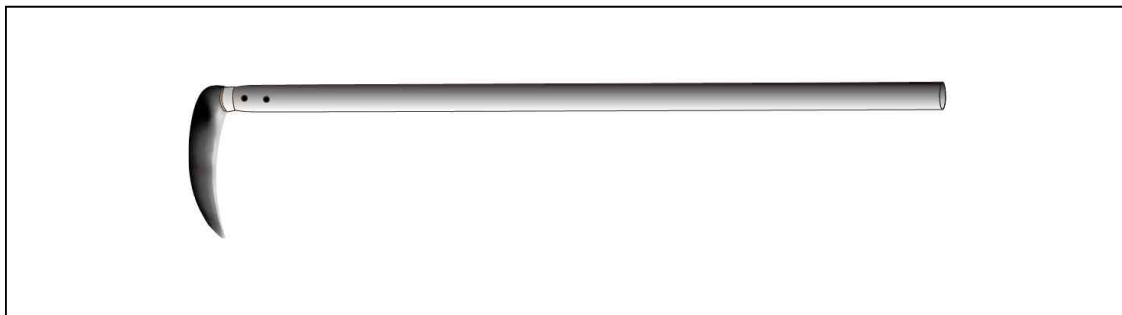
1) 통발의 형태: 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형태로, 통발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2) 사용방법: 통발에 긴 줄을 달아 물속에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들어 올려 통발 속에 들어간 대상물을 잡는다. 이 경우 통발의 가로·세로·높이의 길이(원통형인 경우 지름을 말한다)는 각각 80센티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, 통발의 개수는 1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5. 낚대(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마목)

가. 낚대의 형태: 낚에 대나무 등 장대를 연결한 형태로, 낚대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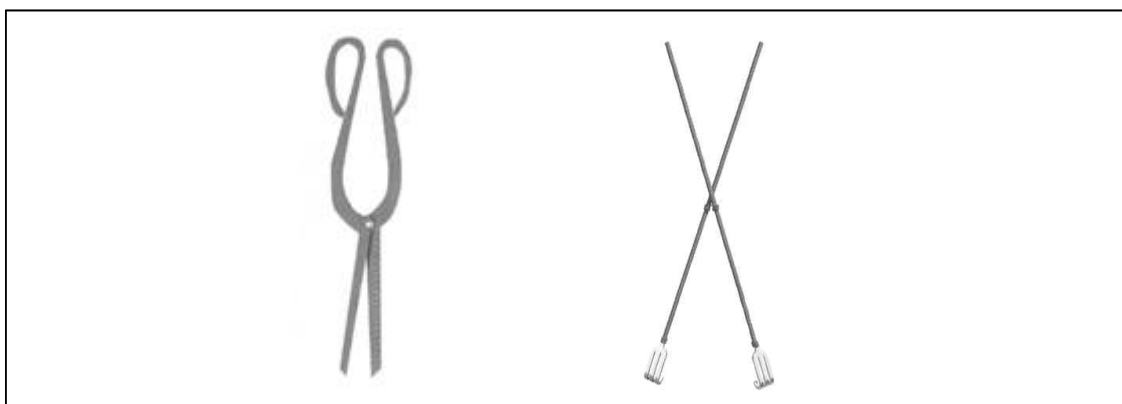


나. 사용방법: 비료용 해조를 채취하기 위해 장대 끝에 달린 낚으로 해조를 자른 후에 가까이 끌어당겨서 채취한다.

6. 집게, 갈고리, 호미, 삽(영 제7조의2제1항제1호바목)

가. 집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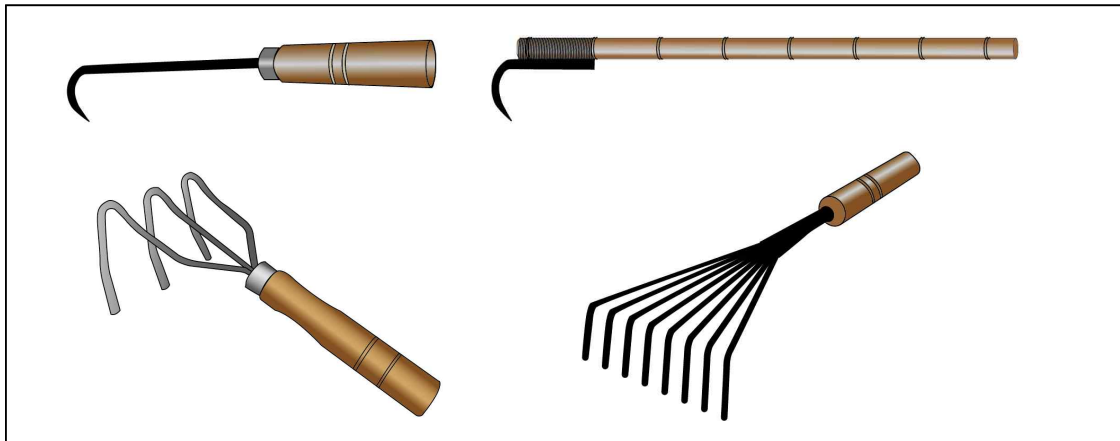
1) 집게의 형태: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그 끝으로 대상물을 집을 수 있는 형태로, 집게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- 2) 사용방법: 대상물을 갈래 사이로 넣고 갈래 끝을 서로 맞닿도록 조작하여 대상물을 집어서 잡는다.

나. 갈고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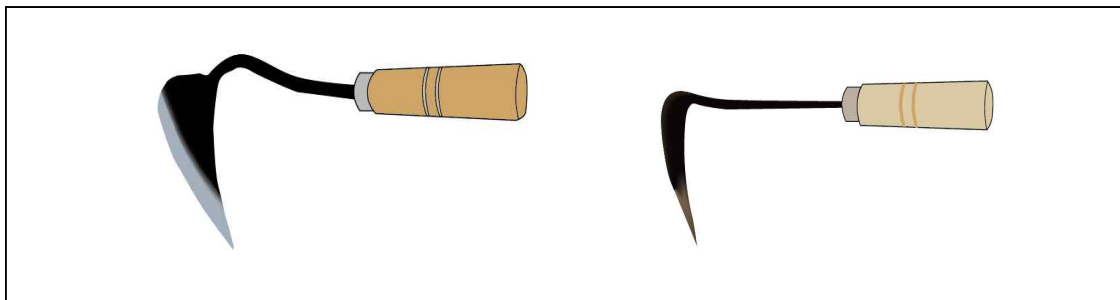
- 1) 갈고리의 형태: 쇠를 구부려서 앞쪽 끝은 뾰족하게 만들고, 뒤 끝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, 뾰족한 앞쪽 끝이 1개인 외갈고리 외에 앞쪽 끝이 여러 개인 갈고리들도 포함하며, 갈고리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- 2) 사용방법: 주로 대상물의 몸체를 훑아 잡거나 그 주변을 파내어 잡는다.

다. 호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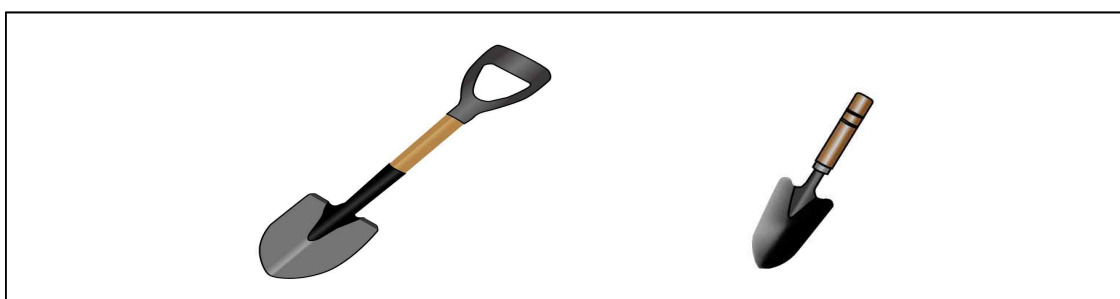
- 1) 호미의 형태: 끝은 뾰족하고 위는 넓적한 삼각형의 쇠판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, 호미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- 2) 사용방법: 뾰족한 끝으로 대상물의 주변을 파내거나 대상물을 캐내어 잡는다.

라. 삽

- 1) 삽의 형태: 삼각형 등의 얇은 판(板)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, 삽의 도면은 아래 표의 그림과 같다.



2) 사용방법: 대상물 또는 그 주변의 흙 등을 파거나 떼서 대상물을 잡는다.